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파크골프장, 풋살장을 체육시설(시행령 별표1)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파크골프장,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(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)

- (현행) 골프장, 볼링장, 테니스장 등 46종
- (개정안) 파크골프장, 풋살장 포함 48종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0. 00. ~ 1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운동종목의 체육시설종류란 중 “인공암벽장”을 “인공암벽장, 파크골프장, 풋살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156